

의안
번호

462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04. 1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오 중 균 의원 외 17명

나. 의안번호 : 제462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4. 10.

2. 제안이유

-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- 나.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(안 제14조제1항)
- 다.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04. 03. ~ 2025. 04. 08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높여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안 제12조(재심의)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및 주요 내용이 추가 변경된 경우,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증감된 경우에는 연구용역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, 이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용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며,
- 안 제14조(용역결과의 공개)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례의 위임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,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용역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.